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8호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영 제42조제4항제2호”를 “영 제42조제4항제2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전담하며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로 한다.

제3조 중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을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 중 “ZEUS(또는 NTIS)” 또는 “NTIS”를 각각 “ZEUS”로 한다.

제23조제1항과 제2항 중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정산정보”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비 관리시스템 정산정보”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로 한다.

제26조 중 “지정하여”를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기관자체 교육 실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장비책임관, 구매·자산담당자 및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

제30조제2항 중 “연구장비·재료비(세목)”를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활용수요”를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휴·저활용·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를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시설장비를”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체"를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를 "해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불용 시설장비"를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시설장비"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변경,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9절의 제목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한다.

제39조 다음에 "제10절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삽입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2조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0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2조 중 "2019년 11월 30일"을 "2022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제2조제8호와 제9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9조,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의 시설장비 정보관리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 제30조제2항의 연구개발비 비목명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시점은 2019년 9월 1일 이후로 한다.

[별표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중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를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http://nfec.ntis.go.kr"를 "www.zeus.go.kr"로, "전문기술인력" 또는 "전담인력"을 "전담운영인력"으로, 전담운영인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

- 전담운영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별표 8]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 중 해체와 폐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내 용
해체	○ 기관 내 재활용 수요(계속과제 수행, 유사장비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한 부품·재료 재활용)가 없을 경우 시설장비의 부품 또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폐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처분되지 않았거나, 안전·보안 등 상의 사유로 폐기하는 것이 기관에 유리하거나 전소(全燒), 수몰(水沒) 등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